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정장소 외 어항구역 내 취사·야영행위 금지〉

■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189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정장소 외 어항구역 내 취사·야영행위 금지 등	2
[참고자료]	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소병훈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2. 3.

3. 회 부 일 : 2024. 12.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어항구역에서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 이러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캠핑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캠핑장이 부족해짐에 따라 어항구역에서 불법으로 캠핑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항구역 내 쓰레기 무단 투기 사례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어항구역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어항의 효율적이고 쾌적한 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45조제8호 및 제62조제2항제4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지정장소 외 어항구역 내 취사·야영행위 금지 등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어항시설에 대한 또는 어항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및 제62조 개정)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u><신설></u> 8. (생략)	제45조(금지행위)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u> 9. (현행 제8호와 같음)
제60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5조제3호	제6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부터 <u>제8호까지</u>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제46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또는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 7. (생 략) 제62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③ · ④ (생 략)	---<u>제7호까지 및 제9호</u>----- ----- ----- ----- ----- ----- 5. ~ 7. (현행과 같음) 제6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제45조제8호를 위반하여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u> ③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나. 검토의견

- ☐ 현행 「어촌·어항법」은 제38조에 따라 어항관리청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어항시설을 사용·점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정권자가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어항구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관광구역을 설정하여 레저선박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1) 「어촌·어항법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현재 어항구역 내에서도 일부 레저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캠핑인구의 증가에 따라 캠핑장이 부족해지면서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서 캠핑을 하는 등 어항의 이용질서를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어항구역 내에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어항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제45조에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 또는 야영행위를 추가하고,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이자 공공 재산인 어항구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어항의 이용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금지행위 비교]

현 행	개 정 안
제45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시설에 대하여 또는 어항구역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어항시설을 파괴하여 어항의 기능을 해치는 행위	현행법 + 8. <u>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u>

제19조(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에서 “해양관광·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유람선(모터보트를 포함한다)·낚시어선·요트 및 윈드서핑 등 해양관광·레저용 선박 등의 계류시설 및 그 보조시설
2. 바다낚시시설 및 그 부대시설
3. 어촌관광 안내소, 주차장 등 관광객 편의시설
4. 지역특산물 판매장, 횃집 등 어촌소득증대 또는 관광객이용을 위한 시설
5. 숙박시설·목욕시설·오락시설 등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
6. 그 밖에 어촌관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어항시설의 구조를 개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행위 3. 폐선을 내버려두는 행위 4. 어항구역을 매립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5. 어항구역에 장애물을 내버려두거나 어항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6. 폐기물을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7. 어항의 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행위(어항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교습양식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그 밖에 어항의 보전 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

□ 관계 부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어항구역 내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주차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고, 어업활동에도 지장이 발생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지정장소 외의 캠핑행위를 금지하여 어항관리청의 질서 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22

참고 1

어항의 종류 및 현황

□ 어항의 종류 및 현황

구 분	국가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정의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도서벽지에 소재하여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이용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어촌의 생활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어촌정주어항에 속하지 아니한 소규모 어항으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항·포구
지정권자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개발주체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 시장·군수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관리청	광역시장, 시장·군수	광역시장, 시장·군수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지원조건	국비 100%	지방비 100% (단, 어촌뉴딜300, 어촌신활력 사업은 국고보조 70% 지원)	지방비 100% (단, 어촌뉴딜300, 어촌신활력 사업은 국고보조 70% 지원)	지방비 100% (단, 어촌뉴딜300, 어촌신활력 사업은 국고보조 70% 지원)
항 수	115개 항	289개 항	632개 항	2개 항

※ 비법정 소규모 항포구: 1,251개 항

□ 어항현황

(단위 : 개 항)

구 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국가어항	115	3	5	2	1	14	10	7	34	14	20	5
지방어항	289	13	15	4	5	14	28	10	93	22	66	19
어촌정주어항	632	13	33	13	13	22	33	16	94	12	337	46
마을공동어항	2	-	-	-	1	1	-	-	-	-	-	-
소규모항포구	1,251	19	39	7	11	7	36	9	866	82	143	32
소 계	2,289	48	92	26	31	58	107	42	1,087	130	566	102